

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.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. 31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. 31(제8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김 재 월

나. 개정사유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예규등의 처리 지침의 개정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1회용품의 사용자제를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식품 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현행 33㎡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확대 시행하고 면적별로 (33㎡ 미만:30만, 33㎡ 이상 ~ 100㎡미만:50만, 100㎡이상:100만) 차등 과태료 부과(제2조 제2호 관련)
- 대형점등 매장면적이 33㎡이상인 판매업을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하고 면적별로 (33㎡ ~ 165㎡ 미만:3만, 165㎡이상 ~ 1,000㎡ 미만:10만, 1,000㎡ 이상:20만) 차등 과태료 부과(제2조 제2호 관련)
- 제품의 포장방법 및 공간비율에 대한 조지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제2조 제1호 관련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'99. 2.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, 공포됨에 따라 법률 내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,

- 식품집객업소와 대형 매점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면적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유도하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‘생략’

5. 토론요지

‘생략’

6. 심사결과

‘원안가결’

첨 부 :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.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【별표1】

과 태 료 부 과 기 준

부 과 대 상	부과금액(천원)			비고
	1 차 위반	2 차 위반	3 차 위반 (이후)	
1.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(법 15조제2항)	300	300	300	
2.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(법 제15조 제2항)				
가.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			
(1) 기준보다 25%미만 초과한 때	200	300	300	
(2) 기준보다 25%이상 초과한 때	300	300	300	
나.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			
(1)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	200	300	300	
(2) 기준보다 2회이상 더 포장한 때	300	300	300	
다.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(라미네이션) 또는 도포(코팅)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300	300	300	
라. 완구,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300	300	300	
마.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율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300	300	300	

부 과 대 상	부과금액 (천원)			비고
	1 차 위반	2 차 위반	3 차 위반 (이후)	
3. 다음 업소에서 자원의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(법 제15조 제5항)				
가.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(도포)되거나 첩합(라미네이션)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.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			
(1)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㎡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(도포)되거나 첩합(라미네이션) 1회용 광고선물 제작.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100	300	300	
(2) 객실과 객석면적이 33㎡ 이상 100㎡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(도포)되거나 첩합(라미네이션)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.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50	100	300	
(3) 객실과 객석면적이 33㎡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로 코팅(도포)되거나 첩합(라미네이션)된 1회용 광고선전물. 배포	30	100	300	

부 과 대 상	부과금액(천원)			비고
	1 차 위반	2 차 위반	3 차 위반(이후)	
<p>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</p> <p>나.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및 숙박업소(객실 7실이상)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무상제공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</p> <p>다.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㎡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</p> <p>(1)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도매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(도포)되거나 첩합(라미네이션)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, 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</p> <p>(2) 매장면적이 1,000㎡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(도포)되거나 첩합(라미네이션)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, 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</p> <p>(3) 매장면적이 165㎡ 이상 1,000㎡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</p>	100	300	300	
	300	300	300	
	200	300	300	
	100	200	300	

부 과 내 상	부과금액(천원)			비고
	1 차 위반	2 차 위반	3 차 위반(이후)	
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(도포)되거나 접합(라미네이션)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			
(4) 매장면적이 33㎡이상 165㎡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(도포)되거나 접합(라미네이션)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, 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30	200	300	
(5) 재활용품의 교환, 판매매장의 설치, 운영(영제12조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)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300	300	300	
라. 식품제조, 가공업, 즉석판매제조,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				
(1) 식품제조,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	200	300	300	
(2) 즉석판매제조,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50	100	300	
마.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, 종합 소매업(영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를 제외한다)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	200	300	300	

부 과 대 상	부과금액(천원)			비고
	1 차 위반	2 차 위반	3 차 위 반 (이후)	
지재질로 도포(코팅) 또는 첩합(라미네이션) 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. 배포억제에 내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			
4.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 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(법 제16조 제2항)	50	70	100	
5.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(법 제34조제3항)	30	50	100	